

지역 노인복지 사무소:

(Name of Area Agency on Aging)

노인 프로그램의 확대된 재택 서비스 및 지역 서비스

고객의 권리

노인 프로그램의 확대된 재택 서비스(EISEP)를 받는 고객이거나 케이스 관리를 받거나, 비시설 임시 간호에 해당되거나 노인 프로그램의 지역 서비스(CSE)에 따라 재택 서비스를 받는 경우,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1. 프로그램에 허가될 때 서면으로 귀하의 권리를 통보받을 권리.
2. 케어 플랜의 개발, 정정 및 종료에 참여하고,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와 시기, 방법에 관해 통보받을 권리.
3. 케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나 기관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역할에 대한 정보를 받을 권리.
4. 가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적절한 현재 신분증을 받아볼 권리.
5. 질문이나 불만을 말하거나, 직원의 결석을 알리거나, 응급상황 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지정된 케이스 매니저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를 받을 권리.
6. 거절 결과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받고 이해한 후 다른 서비스의 상실 없이 케이스 관리를 제외한 플랜의 일부를 거절할 권리. 케이스 관리는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요구조항이며 다른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거절할 수 없습니다.
7. 프로그램 직원, 지역 노인복지 사무소 직원, New York State Office for the Aging에 정책과 서비스 변경을 권고할 권리.
8. 불만을 제기하고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학대, 홀대, 또는 방치로부터 보호책을 구하고 도움 받을 권리.
9. 구두상 또는 서면으로 사무소의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정보를 받거나 간섭, 강요, 차별 또는 보복을 걱정하지 않고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외부 대리인을 선택해 도움을 받을 권리.
10. 본인의 케이스 기록을 볼 권리
11. 서비스를 제공받음에 있어 배려, 존중, 존엄으로 대우받을 권리.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a) 문화 및 종교적 신념, 관행 및 선호하는 언어에 대해 대우받고 존중받을 권리

(b) 가정 환경, 가구 및 소유물에 관한 생각을 존중받을 권리.

(c) 집에 오는 사람은 적절한 행동 기준을 보일 것.

12. 귀하의 케이스 기록이 기밀로 유지될 권리.

13. 인종, 신념, 피부색, 국적, 성별, 나이, 장애, 성적 취향, 성 정체성, 결혼 또는 가족 상태, 정치적 소속, 군대 신분, 체포 또는 유죄 판결 기록, 가정폭력 피해자, 취약한 유전적 특성, 또는 관련 연방 및 New York State 인권법과 규정에 따라 보호받는 기타 특성들과 상관없이 EISEP 서비스를 받을 권리(단,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프로그램의 모든 프로그램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함).

14. 비용 분담액을 초과하여 돈을 지불하지 않을 권리.

15. 평가된 비용 분담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

16. 다음과 같은 경우 EISEP에서 퇴출됩니다.

(a) 귀하나 귀하의 대리인이 EISEP에서 퇴출을 요청할 경우 또는

(1) 9 NYCRR § 6654.15의 주 규정에 명시된 자격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할 경우.

평가를 거부하거나, 케어 플랜에 동의하지 않거나, 케이스 관리자나 직원이 지시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거나, Medicaid 자격 또는 비용 분담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소득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9 NYCRR § 6654.6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 분담액을 제공하지 않는 등 EISEP 요구사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3) 향후 90일 내에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b) 다음의 경우에는 비용 분담액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퇴출되지 않습니다.

(1) 요구되는 비용 분담액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서면 통보를 받지 않은 경우.

(2) 비용 분담액이 지불되었는지 여부 또는 지불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해명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

(3) 서비스가 종료될 수 있다는 사전 서면 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

(4) 프로그램의 퇴출 절차에 대한 설명을 받지 못한 경우

(c) 퇴출되더라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절한 케어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d) 귀하가 비자발적으로 퇴출될 경우 퇴출 일자로부터 적어도 5일 전에는 서면으로 해당 사유를 통보받게 됩니다. 서면 내용에는 퇴출과 관련해 지역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